

#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8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9월 18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류한철

## 1. 수정이유

급수장치 관리에 있어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시에 기부하면서 관리의무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“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” 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급수장치관리 중 “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” 는 내용을 삭제함.(안 제11조 제2항)

##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 제2항을 “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” 로 한다.

# 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)	제11조(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)	제11조(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)
① ( 생 략 )	① (현행과 같음)	① (현행과 같음)
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그 외의 급수장치시설을 수도사용자가 책임 유지·관리한다.	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<b>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</b> 진다. 다만,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.	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.